

[서식 예] 감봉처분 취소청구의 소

소 장

원 고 O O (주민등록번호) OO시 OO구 OO길 OO (우편번호 OOO-OOO)

피 고 △△시장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감봉처분 취소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가 20○○. ○. ○.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처분의 경위
 - 가. 원고는 지방직 8급 공무원으로 △△시 회계과에서 근무하면서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지급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 - 나. 그런데 소외 윤□□이 20○○. ○. ○.에 일용직 영양사로 고용되어 시청식당에서 노무를 제공하던 중 같은 해 ○. ○.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1년 미만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원고가 퇴직금지급 규정을 잘못 알고 20○○. ○. ○.에 퇴직금 금500,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.



- 다. 이후 20○○. ○. ○.에 원고는 소외 윤□□에 대한 퇴직금지급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소외 윤□□에게 조속한 시일내에 퇴직금을 반환해줄 것을 전화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윤□□이 차일피일 미루며 퇴직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.
- 라. 그러던 중 20○○. ○. ○.에 △△시청의 자체 감사에서 윤□□에 대한 퇴직금이 잘못 지급되었음이 지적되었습니다.
- 마. 감사실에서는 원고가 윤□□과 고등학교 동기로 절친한 친구사이로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지급하였고, 원고가 소외 윤□□에 대한 퇴직금환수 노력을 태만히 하였다는사유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○○. ○.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.

2. 징계처분의 위법

- 가. 원고는 19○○. ○. ○.에 △△시청 9급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래 교통과에서 근무하여 오던중 20○○. ○. ○.에 회계과로 발령 받아 퇴직자에 대한 퇴직 금지급 업무를 맡게 되었으며 소외 윤□□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업무 파악이 되지 않아 단순 실수로 인하여 윤□□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.
- 나. 원고는 20○○. ○. ○.에 소외 윤□□에 대한 퇴직금이 잘못 지급된 것임을 알았고 이후 소외 윤□□에게 전화상으로 퇴직금을 조속히 반환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소외 윤□□이 사정이 어렵다며 차일피일 미루곤 하였습니다.
- 다. 원고는 소외 윤□□이 고등학교 동기로 친구사이여서 법적 조치를 취하지는 못 하였으나 퇴직금을 환수받기 위해서 수십차례에 걸쳐 전화로 독촉하고 소외 윤□□의 집에까지 찾아가 독촉한 바가 있습니다.
- 라. 원고가 소외 윤□□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원고와 소외 윤□□이 친구 사이여서 이득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퇴직금 규정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 실수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입니다.
- 마. 소외 윤□□은 원고가 자신의 일로 감봉처분을 받은 것을 알고는 퇴직금을 즉시 반납하였습니다.

3. 결론

원고가 규정을 잘못 알고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오로지 단순 실수로 인한 것이고 소외 윤□□과의 친분에 의하여 이득을 주기 위한 것이



아니었고, 소외 윤□□이 퇴직금을 반납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의 범위에서 벗어난 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감봉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 1호증

퇴직금반납확인서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

1부

1. 소장부본

1부

1. 납 부 서

1부

2000. 0. 0.

원 고 ㅇ ㅇ ㅇ (인)

○ ○ 행정법원 귀중

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제소기간	※ 아래(2) 참조
청 구 인	피처분자	피청구인	행정처분을 한 행정청
제출부수	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 큼의 부본 제출	관련법규	행정소송법 9 ~ 34조
비 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불복방법 · 항소(행정소송법 8조, 민사소송법 390조) 및 기 간 ·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(행정소송법 8조, 민사소송법 396조)			

※ (1) 관할법원(행정소송법 9조)

- 1.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. 다만, 중앙행정기관,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과 국 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2.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.

※ (2) 제소기간(행정소송법 20조)

- 1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. 다만,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 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 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 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.
- 2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(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)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.